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자격	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또는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또는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분야에서 2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